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6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이수진·송옥주·이성윤

박해철 • 민형배 • 서영교

한정애 • 박홍배 • 김정호

박홍근 · 김성환 · 김영진

용혜인 • 윤호중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직업소개소 등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창출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함)을 육성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하여 공익적 제공기 관을 선정·육성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제공기 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①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 1. 조직형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2. 조직목적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질 제고, 일자리 창출, 일·가정양립 증진, 취약계층 가사서비스 지원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할 것
-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전 설> 제18조의2(공의적 제공기관 육성) ①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공기관(이하 "공의적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조직형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조직목적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결제고, 일자리 창출, 일·가정양립 증진, 취약계층 가사서비스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

 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

 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 지 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